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545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6일

발 의 자 :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의원

## 1. 제안이유

-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안 제6조)
- 라. 재정지원(안 제11조)
- 마.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설치(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등
-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비용추계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0. ~ 2026. 2. 23.(14일간), 아래 참조

## <안전교통과 및 의회사무과 의견>

조례안(의회안)	검토안	사유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상위 법령과 중복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중복된 내용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상위 법령과 중복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와 중복된 내용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타 조례와 중복 및 권한 문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 지도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군수가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형태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상위법 및 기존 조례와 중복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교통소통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도 중복된 내용으로, 기존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통학로 안전 대책을 포함하는 방향이 안전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제11조(재정지원)	타 조례와 중복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지원대상 중복

제12조(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설치)	상위 법령과 중복	「도로교통법」 제32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허용한 구간에서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장의 고유 권한임.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교내 승하차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	--

## 안전교통과

금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이미 타 법률,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동일하게 다시 재규정하는 조항이 많음.

본 안은 기존의 타 법령, 조례, 규칙의 내용과 중복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안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본 안 제정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고, 조례 제정시 불필요한 반복 입법 지양, 추후 유사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있음으로 제정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유사 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으로도 본 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조례 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은 행정력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법체계 안정성, 행정 효율성, 입법 목적의 달성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사 타 법률 및 조례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교통안전지도), 제6조(교통안전교육),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교통대소통대책의 수립),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등.

## 의회사무과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타 법령 혹은 타 조례와 ‘일부 중복’, ‘유사’ 하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아울러 전국에 유사한 120여개의 입법례가 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3개)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판례)

또한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며 주로 중복된다고 말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당 규칙만으로 어린이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정 및 개선 등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포괄하기에는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구와의 유사성 등을 통해 중복입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념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본 조례안 제11조(재정지원)가 중복된 내용이라 말하지만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학교 내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규율하는 조례인 반면, 본 조례안 11조는 어린이가 실제로 이용하는 학교 밖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인데 적용대상과 영역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 지도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군수가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형태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는 학교장에게 학교 내부 출입 차량 관리 및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는 학교 부지 내 또는 학교 주관 교육활동에 한정됩니다.

반면 본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어린이가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로 및 등·하교 동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적·지원적 성격의 규정으로, 학교장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내용이 아니라 협력 및 권고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는 적용 범위와 행정 주체, 정책 목적이 상이하야 충돌 또는 중복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조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군수가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복으로 보거나 지역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타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이므로 이하 생략합니다.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평창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등·하교 교통안전지도)** 군수는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설치)**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평창교육지원청, 평창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 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 9. (생략)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제11조(재정지원)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
  -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 330 - 2019